

# 건강가정사의 역할, 자격 및 양성 방안\*

## The Roles, Qualification, and Fostering System of Healthy Families Specialist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전임강사 성미애\*\*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시간강사 이현아\*\*\*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Sung, Mi-Ai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Lee Hyun-Ah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mmend the roles, qualification, and fostering system of healthy families specialist. In 2003, "Organic Law to Develop the healthy Families" was legislated. The law endows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families, in order to embody the healthy families. Also, this suggests appropriate ways to solve diverse families problems and identifies the necessities of establishing social policies to increase the well-being of family members. The enactment system of this law is to place 'Healthy Families Center' under the Prime Minister, and to foster 'healthy families specialist' wh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for strengthen diverse families. The major recommend are as follow. First, the roles of healthy families specialist are a practitioner, deliverer, and administrator to enact the law's philosophy and ideal. Secondly, to protect the competency of those, the qualification is restricted to university and the same level school graduate people, who majored in Home Economics, Social Work, and Women Studies. Finally, to foster and qualify this specialist, the Council of Healthy Families will be compound.

---

▲주요어(Key Words) : 건강가정(Healthy Families), 건강가정기본법(The Act of Healthy Families), 건강가정사(Healthy Families Specialist), 건강가정사업(Healthy Families Project), 건강가정지원센터(Healthy Families Center)

## 1. 서론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양성, 배출되고 있다. 특히 이전 시대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에도 이제는 많은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

가 가정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는 전문가일 것이다.

원래 가정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사적이고 여성의 영역으로만 치부되어 왔다. 또한 가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안식처라는 신화가 작용하는 영역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많은 경우 가정생활에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많으며, 실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삶을 실현하는 장(場)으로 가정생활의 의미가 재확인되면서, 가정은 오늘날의 주된 담론 영역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

\*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용 수정보안한것임.

\*\* 주저자 : 성미애 (E-mail : eliza\_s@kno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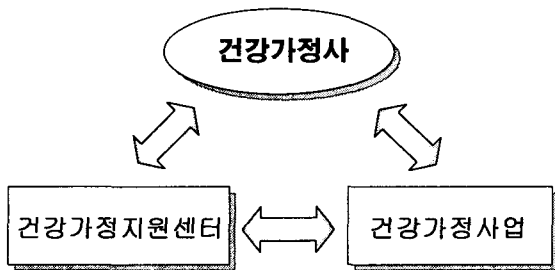
\*\*\* 교신저자 : 이현아 (E-mail : leehyun@snu.ac.kr)

서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12월 역사상 처음으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법 제 1 조에서 밝혔듯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건강가정으로 정의하고,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건강가정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이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건강가정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건강가정사가 요구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실현을 위한 체계를 다음의 <그림1>과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사의 세 가지 중심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건강가정기본법 실현을 위한 체계

특히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하드웨어가 된다면, 건강가정사업은 이를 채우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는 최종 목표인 건강가정을 실현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를 운영하는 주체로 기능하는 핵심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사의 역량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의 실현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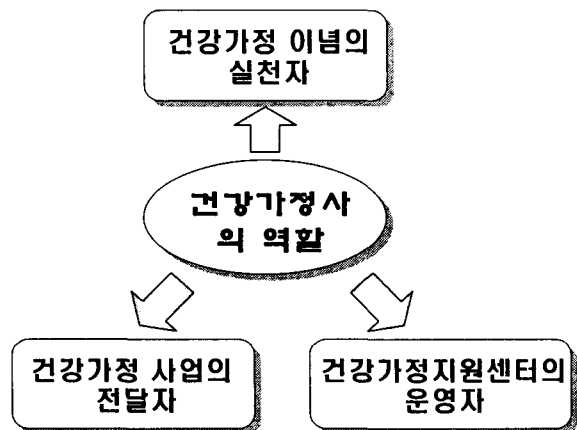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건강가정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건강가정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사의 자격요건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양성 및 재교육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건강가정사의 역할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목적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이며,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건강가정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수행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사업의 수행 주체로서 그 역할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건강가정사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 3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건강가정사의 역할은 우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기본 이념과 철학을 기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건강가정사의 역할은 보다 구체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건강가정사업을 기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사의 역할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조직운영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림 2> 건강가정사의 역할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철학과 이념의 실천자로서, 또한 건강가정사업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의 운영자로서 그 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철학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경영 지식과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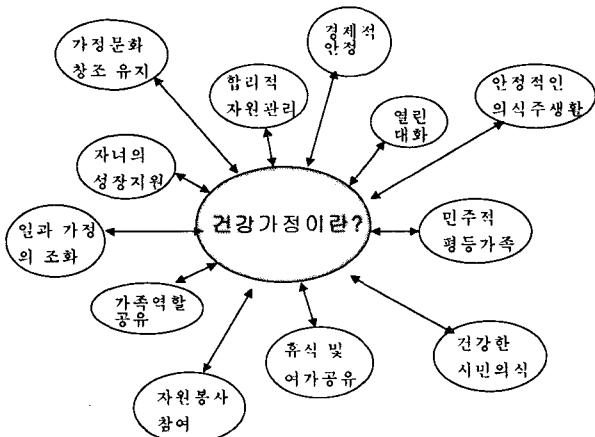
먼저, 건강가정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기본 철학과 이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족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가정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가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가정 기능의 강화, 둘째, 가정의 잠재력

개발, 셋째, 가족공동체 문화의 조성, 넷째,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육구 충족, 다섯째, 가정과 사회의 통합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본 이념은 '건강가정'의 개념 속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 건강가정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건강가정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일부 여성계에서는 '건강가정'의 개념에 대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이분화의 맥락으로 오해하기도 하였다. 즉, 이들은 마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건강가정의 이념형으로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추구하는 진정한 건강가정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편견에서 나온 것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건강가정은 후기 산업사회의 화두인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을 그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건강가정의 의미가 어떤 이념적인 가족의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정을 기본으로 하며, 양성평등적이고,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가정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가정이 단순한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시민사회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공동체적 입장을 취한다.

건강가정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즉 건강가정은 열린 대화와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하는 가정이며, 그 속에서 가족원과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이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가정이다. 또한 일과 가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 가정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발전적인 가정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그림 3> 건강가정의 개념도

자료 : 건강가정기본법 추진실무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둘째,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사업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건강가정사업은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 지원,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적인 가족관계 증진,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 가정생활문화 발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양성,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 교육,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표 1).

<표 1> 건강가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건강가정사업	구체적 내용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1.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 - 가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지원 -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 안정된 주거생활 -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 직장과 가정의 양립 - 음란물, 유흥가, 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그 외 건강한 가정의 기능 강화, 지원할 수 있는 사항 2.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의 확산 3.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 가정, 그룹홈,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제22조 자녀양육지원 강화	1.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의 적극적 확대 2. 만18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지급
제23조 가족단위 복지증진	1.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 2.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우대 방안 강구
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적인 건강증진 대책 마련
제25조 가족부양 지원	1.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해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 강구 2.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족을 적극 지원, 전문보호시설 확대 3.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 마련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1.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상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 2. 가정폭력이 있는 가족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제27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1.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원의 성장을 위해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 2.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

&lt;표 1&gt; 건강가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lt;계속&gt;

건강가정사업	구체적 내용
제28조 가정생활문화발전	1. 건강한 가정생활문화를 고취, 그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 - 가족여가문화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 합리적인 소비문화 -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 기타 가정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29조 가정의례	1.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 2.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
제30조 가정봉사원	1.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기 위하여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지원 2.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3.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일급액을 지급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1.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 3.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제32조 건강가정교육	1. 건강가정 교육을 실시 - 결혼준비교육 - 부모교육 - 가족윤리교육 -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교육 등
제33조 자원봉사 활동 지원	1.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 육성, 장려

따라서 건강가정사는 가정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응용 능력, 창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셋째,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업의 활성화, 건강가정사업의 총괄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프로그램개발과 제공, 건강가정사업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중추기관이라 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국 조직 체계를 유기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중앙,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세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리매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등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관리,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각 시·도 단위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시·도의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력을 개발·보급하며 예산을 배정하고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군구 단위로 건강가정사업을 집행하며,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사업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필요한 곳에 건강가정사를 파견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예산을 집행, 배분하며 시군구 단위의 가족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가정단위 자원봉사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는 일을 담당한다.

결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건강가정사인 만큼, 건강가정사는 조직운영의 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공공시설 경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 리더쉽, 시설관리, 마케팅 등 경영의 하위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철학과 이념의 실천가로서, 또한 건강가정사업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의 운영자로서 그 역할을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철학을 이해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영 지식과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한다. 다음에는 이상에서 제시한 건강가정사의 3가지 역할을 토대로 하여 그들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규정과 양성 및 재교육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건강가정사의 자격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제 35조 2항)로, 앞서 건강가정사의 역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하고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경영 지식과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제35조 3)로 명시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35조 4항) 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인구·가정정책과)에서 2004년 내에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 중이고, 이와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우리 학계를 대표하여 대한가정학회 이름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난(2004) 8월 23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여 현재 관련부처와 학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난 2월 28일 대한가정학회 이름으로 제출하였던 가정학계의 의견을 중심으로 건강가정사의 자격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건강가정사의 자격은 등급과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와 연수, 건강가정사의 직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건강가정사가 담당하는 직무는 담당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다음 <표 2>와 같이 3급(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강가정사 1급은 관리자급, 2급은 중간 실무자급, 3급은 일선 실무자급으로, 각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와 성격이 다르고, 그 자격요건 또한 구별된다.

먼저 건강가정사 1급은 관리자급으로 건강가정사업의 운영 및 관리, 기획 및 홍보, 예산집행, 조직 및 인사, 조사연구기획, 프로그램개발, 인력개발 및 보급, 마케팅, 네트워크구축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 한편 건강가정사 2급은 중간실무자이므로, 건강가정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홍보 및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집행 및 활동, 건강가정사업 요구도 분석 및 사업개발, 네트워크구축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사 3급은 일선 실무자로서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 집행 및 활동, 대상자 초기면접 및 상담, 실태조사, 홍보 및 캠페인,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한다.

<표 2> 건강가정사 등급별 직무 규정

건강가정사 1급(가칭)의 직무	
①	건강가정사업의 운영 및 관리
②	건강가정사업의 기획 및 홍보
③	건강가정사업의 예산 집행
④	건강가정사업의 조직 및 인사
⑤	건강가정사업 관련 조사연구의 기획
⑥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 개발
⑦	건강가정사업 인력개발 및 보급
⑧	건강가정사업 홍보 및 마케팅
⑨	건강가정 관련 상담 및 교육
⑩	건강가정사업 관련 네트워크구축

건강가정사 2급(가칭)의 직무	
①	건강가정 관련 상담 및 교육
②	건강가정사업 홍보
③	건강가정사업 코디네이터
④	건강가정사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⑤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 집행 및 활동
⑥	건강가정 요구도 분석 및 사업 개발

건강가정사 3급(가칭)의 직무	
①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 집행
②	건강가정사업의 활동
③	건강가정사업 대상자 면접 및 초기상담
④	건강가정 정보망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⑤	건강가정 요구도 및 실태 조사
⑥	건강가정 홍보 및 캠페인
⑦	관련 사무

다음으로 이러한 전문적인 직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능력에 맞는 자격요건이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규정될 예정인데, 본 논문에서는 대한가정학회 의견을 토대로 건강가정사 1급, 2급, 3급의 등급별 자격요건(안)을 다음 <표 3>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우선 실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대면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가정사 3급의 경우 전문대학 학사 및 동등 학력 소지자로 자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주 실무 역할을 담당하는 건강가정사 2급의 경우 4년제 대학 학사나 3급 자격소지자로 2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건강가정사 1급의 경우 관리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관련 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나 건강가정사 2급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표 3> 건강가정사 1, 2, 3급 자격 요건(안)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	
1급	1. 건강가정사 2급 자격자로서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 관련 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건강가정사 2급 자격자로서 관련 현장경험이 2년 이상인 자
2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교의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등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대학에서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지 아니한 동 전공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건강가정사 3급 소지자로 2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자
3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동등 학력 소지자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이상과 같은 대한가정학회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부 인규·가정정책과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 제 15조에서 건강가정사의 자격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건강가정사의 자격 등)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교과목 중 전공과목 4과목이상, 관련과목 4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한 자(전공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7. 기타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서는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등급 없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대한가정학회의 의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가정사는 그 직무에 따라 급수를 나누고 급수별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 교육,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등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직무의 성격에 따라 관리적 업무와 실무적 업무, 대민 서비스적 업무 등으로 세분되기 때문에, 건강가정사의 자격 또한 다양한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등급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건강가정사의 자격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제시한 각 등급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강가정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서 자격인증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풍부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교과목 이수기준을 통해 자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가정생활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사는 인간과 사회환경, 가정생활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인간, 가정, 사회, 환경에 대해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들간의 상호적, 유

기적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정생활의 제반 하위 분야에 대한 지식 또한 건강가정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실천기술 또한 갖추어야 한다. 즉,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경영관리 기술이 있어야 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천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며, 다양한 가정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요구 조사 기술, 실천적 교육기법, 상담 및 의사소통 기술, 나아가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 등을 포함한 업무관리 기술 등 다양한 현장 실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한가정학회에서 제출한 의견은 건강가정사의 자격인증을 위한 교과목 기준을 다음의 <표 4>와 <표 5>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4>의 1안은 기존의 교과목을 활용하여 작성한 안이고, <표 5>의 2안은 건강가정관련 교과목을 새롭게 개발하여 작성한 안으로 각기 장단점이 있다.

<표 4>와 <표 5>에 제시된 필수 과목은 건강가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원론의 성격을 갖는 교과목과, 기초 실습 과목을 합친 것이다. 반면, 선택 과목은 기초, 심화, 응용의 성격을 갖는 교과목으로 구성되는데, 기초 과목의 경우 건강가정을 구성하는 인적 토대 및 물질 토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내용이 담긴 교과목이다. 심화 과목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담고 있는 교과목이다. 응용 과목은 건강가정 사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필수 과목은 크게 두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건강가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원론적 성격의 교과목으로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정책론, 가정경영 등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초 실습 과목으로 가족생활교육, 건강가정교육 및 상담, 건강가정현장실습 등이 있다. 1안은 기존 교과목을 활용한 안으로 건강가정론, 가정경영, 가족생활교육, 현장실습 4과목이고, 2안은 새로운 교과개발을 기본으로 한 안으로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정책론, 건강가정교육 및 상담, 건강가정현장실습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제시된 교과목이 다르긴 하지만, 4과목을 모두 필수교과로 이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와 같은 필수 교과목의 이수를 통해 건강가정의 이념과 가치를 이해하며, 거시적, 미시적 맥락에서 건강가정의 틀을 파악하고, 건강가정관련 기초 이론 및 실습 경험을 얻게 된다.

반면, 선택 과목은 기초, 심화, 응용의 성격을 갖는 교과목으로 구성되는데, 기초 과목의 경우 건강가정을 구성하는 인적 토대와 관련된 교과목-가족학, 인간발달과 물질 토대와 관련된 교과목-가계경제, 주거학, 생애주기영양학-, 그리고 인적 토대와 물질 토대를 결부시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경영하는 것과 관련된 교과목-가정생활복지론, 가족자원관리, 가정경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안에서는 가정생활복지론, 가족학,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인간발달, 주거학, 생애주기영양학이, 2안에서는 가정생활복지론, 가정경영, 가족학, 가계경제, 인간발달, 주거학,

생애주기영양학이 포함되었고, 이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같은 기초 교과목이수를 통해 건강가정을 이루는 인적, 물적 토대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실제 인적 물적 토대를 경영하고, 가정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선택영역 중 심화과목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담고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건강가정사업이 가정생활의 제 영역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개발된 것인 만큼, 가족, 아동, 노인,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여가생활, 가사노동, 가계관리 등 가정생활전반에 대한 전문적 접근이 건강가정사 자격이수에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화과목으로는 가족관계, 가족복지, 공공가정경영론(시설운영과 관리), 가계재무관리, 지역사회영양학, 부모교육, 보육학,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노년학, 주택관리, 가정생활과 정보, 의생활관리(의복관리)가 포함되었고, 이중 3과목을 선택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심화과목으로 제시된 교과목은 1안과 2안 모두 동일하다. 이러한 교과목 이수를 통해 가정생활의 세부영역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며, 나아가 종합적인 맥락에서 가정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게 될 건강가정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영역 중 응용과목은 건강가정사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는 교과목으로, 상담 및 교육 관련 교과목(가족상담 및 치료,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교육, 소비자교육 및 상담, 주거상담, 한국가정생활문화, 연구조사방법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교육 및 상담, 주거상담)과,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교과목(연구조사방법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그리고 가정생활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한국가정생활문화)으로 구성되어 있다. 1안 2안 모두 동일한 교과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중 3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용교과목의 이수는 실제 현장에서 가정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며, 현장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1안과 2안을 비교해 보면, 1안의 경우 새로운 교과목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세부 영역으로 분화되어 발전한 가정학의 각 전공분야를, 건강가정사의 직무에 맞게 연계시켜줄 수 있는 필수 과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반면, 2안의 경우 새로운 교과목 개발이 요구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전문화된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자격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다음 <표 6>에서는 1안과 2안에서 제시된 교과목 중 건강가정사 자격인증을 위해서 새롭게 구성해야 할 교과목인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정책론, 건강가정교육 및 상담, 건강가정현장실습 4과목의 교과개요를 살펴봄으로써 건강가정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과 능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교과개요를 제시하지 않은 기존 교과목의 경우에도, 건강가정사 자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 기존의 교과목을 토대로 작성(대한가정학회 1안)

구 분		교과목
필 수(4과목)		건강가정론, 가정경영, 가족생활교육, 현장실습
선 택	기초(2과목)	가정생활복지론, 가족학,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인간발달,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심화(3과목)	가족관계(학), 가족복지, 공공가정경영론(시설운영과 관리), 가계재무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부모교육, 보육학,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노년학, 주택관리, 가정생활과 정보, 의생활관리
	응용(3과목)	가족상담 및 치료,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교육 및 상담, 주거상담, 한국가정생활문화, 연구조사방법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표 5>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전문능력에 맞게 구성한 새 교과목 (대한가정학회 2안)

구 분		교과목
필 수(4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정책론, 건강가정교육 및 상담, 건강가정현장실습
선 택	기초(2과목)	가정생활복지론, 가정경영, 가족학, 가계경제, 인간발달,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심화(3과목)	가족관계(학), 가족복지, 공공가정경영론(시설운영과 관리), 가계재무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부모교육, 보육학,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노년학, 주택관리, 가정생활과 정보, 의생활관리(의복관리)
	응용(3과목)	가족상담 및 치료,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교육 및 상담, 주거상담, 한국가정생활문화, 연구조사방법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표 6> 건강가정사 자격 인증을 위한 필수 교과목 개요

교과명	교과개요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의 개념, 건강가정의 이념과 철학, 건강가정정책 및 건강가정사업의 이해, 건강가정사업 수행의 전담 조직,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자격 등
건강가정정책론	건강가정정책의 형성과정과 구성요소, 건강가정정책의 분석방법 및 정책 평가, 건강가정정책 수립의 기술,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등
건강가정교육 및 상담	건강가정의 개념, 건강가정 강화 교육 프로그램 분석, 건강가정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 가족문제 원인 진단 및 분석, 건강가정 상담 이론 및 기법 이해, 가족문제 유형별 role play 등
건강가정현장실습	기관분석 보고서, 실습일지, 사례기록,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건강가정지원센터에 나가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건강가정 실천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고 체계화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전문 건강가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함)

<표 7> 시행규칙(안)에 제시된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이수 교과목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안) 제6조 관련)

구 분		교 과 목
전공과목(5)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여)성과 가족, 한국가정(족)생활문화, 가족복지실천기술론, 건강가정현장실습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 (7)	기초 이론 (4)	가족학, 가족관계(학),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학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공공가정경영론, 상담이론 중 4과목 이상
	상담· 교육 등 실제(3)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여성학방법론 중 3과목 이상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표 7>에 제시된 교과목은 2004년 8월 23일에 각 부처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에서 발표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안)에 제시된 내용이다. 여기에 제시된 교과목은 <표 5>에 제시한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전문능력에 맞게 구성된 새 교과목(2안)에 근거를 두면서 사회복지학과와 여성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과목은 건강가정 전공과목과 건강가정 관련과목으로 구분하며, 건강가정 관련과목을 기초 이론 영역과 상담·교육 등 실제영역으로 간단히 구분하여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학계의 의견과 여성학계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전체 교과목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공과목에 제시된 '가족복지론'과 관련과목의 기초이론에 제시된 '가정생활복지론', 그리고 관련과목의 상담·교육 등 실제

에 제시된 '연구조사방법론'과 '여성학방법론'이다. '가족복지론'과 '가정생활복지론'은 '가족(가정생활)복지론'으로 통합하여 전공과목에 넣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조사방법론'과 '여성학 방법론'도 통합하여 '연구방법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교과내용의 재구성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된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각 전공분야별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중 하나이다. 새로운 교과목의 구성뿐 아니라 기존 교과목의 재구성에 있어서도 그 원칙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기능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강가정 전문가를 배출하여 가정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적 학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반영한 원칙이다.



### 3. 양성 및 재교육

건강가정사를 양성하며, 재교육을 하는 주체 기관으로 건강가정협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협회는 자격증 관련 업무, 즉 자격증 관리, 자격 검증 및 연수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협회는 단순히 자격증을 교부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건강가정사의 자질과 자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특히 건강가정사 1급의 경우 가정생활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의 관리자의 성격을 갖는 만큼, 교과과정 이수를 통한 자격 검증과 함께 연수교육의 이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협회에서는 1급 건강가정사 승급 시 4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이 연수과정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안).

1. 건강가정교육 및 수퍼비전
2. 건강가정 사례연구
3. 센터의 운영 및 관리
4.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네트워크 활용
5. 한국사회와 건강가정문화
6. 리더십개발
7. 기타

또한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직무 성격으로 볼 때 재교육은 필수적이다. 현재 계속 새로운 가정생활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으며, 실무에 도움이 되는 많은 연구논문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 1급은 최소한 3년마다 1회에 걸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강가정사 1급은 3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연수교육 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가안).

1. 건강가정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 개별가정 사례분석
3. 가족상담기법
4. 인력개발 및 관리
5. 재정확보 및 운영전략
6. 기타

건강가정사의 양성 및 재교육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존에 대한가정학회 가정복지특별위원회에서 인증하여왔던 전문가격인 '가정복지사'에 대한 특례조치에 관한 것이다. 2005년 1월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면 16개 시도 및 253개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하여 2004년 현재 전국 3곳(숙명여자대학교, 여주시청, 김해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가정사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당분간 공백 기간을 대체하기 위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복지사는 가정생활관련 전문가로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자질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클 것이라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안)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부칙으로 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를 제시하고 있다. 부칙에 의하면, 2005년 2월 28일 현재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안)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해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모두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건강가정사 자격의 질 저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제대로 건강가정사의 전문적 자질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련전공 졸업자들 모두에게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관련전공 졸업자들 중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특례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4주 이상의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게 될 교육훈련기관의 선정이나 관리 및 평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양질의 건강가정사가 양성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입법예고된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서는 건강가정사의 재교육 및 연수 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앞서 대한가정학회의 의견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건강가정사의 자질과 자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교육이나 연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 III. 결 론

이제까지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자격, 양성 및 재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가정기본법의 효과적인 실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건강가정사업들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건강가정사들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하드웨어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장이 있고, 그 속에서 소프트웨어로서 건강가정사업이 존재하며,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두 가치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사의 역량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의 실현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건강가정사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3가지 기준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철학과 이념의 실천가로서 역할을 가진다. 둘째,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사업의 전달자의 역할을 지닌다. 셋째,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의 운영자로서 그 역할이 규정되어진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사가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철학을 이해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경영 지식과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강가정사의 역할을 토대로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제시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제 35조 2항)로 규정되어 있고, 그 자격기준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제35조 3항)로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건강가정사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규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한가정학회 의견을 중심으로 건강가정사의 자격등급,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별 직무 등을 제시하였다. 건강가정사가 담당하는 직무는 담당하는 일의 성격을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건강가정사 1급은 관리자급, 2급은 중간 실무자급, 3급은 일선 실무자급으로 구별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대면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가정사 3급의 경우 전문대학 학사 및 동등 학력 소지자로 자격을 규정하였고, 중간 실무역할을 담당하는 건강가정사 2급의 경우 4년제 대학 학사나 3급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건강가정사 1급의 경우 관리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관련 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나 건강가정사 2급 자격소지자로 2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

는 자로 규정하였다.

한편, 건강가정사가 건강가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교과목 이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앞서 제시된 건강가정사의 역할을 그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교과목을 활용한 1안과 건강가정관련 교과목을 새롭게 개발한 2안, 그리고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제시된 교과목이수기준을 제시하였다. 앞의 두 가지 안은 건강가정에 대한 이론과 실례를 기초적으로 다룬 필수과목과 가정생활의 제 영역별 이론 및 실례를 다룬 선택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선택과목은 다시 기초, 심화, 응용 교과목으로 나뉘는데, 기초과목은 건강가정을 구성하는 인적 토대 및 물질 토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내용을 다룬 교과목이고, 심화 과목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담고 있는 교과목이고, 마지막 응용 과목은 건강가정 사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 인구·가정 정책과에서 제시한 시행규칙(안)은 건강가정관련 교과목을 새롭게 개발한 2안에 기초를 하면서도 전공과목 외 관련 교과목을 기초 이론 교과목과 상담·교육 등 실제 교과목 등 두 영역으로만 구분하여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세부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학과와 여성학계의 목소리를 기계적으로 담아주어 교과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건강가정사는 현장에서 직접 개인, 가정, 지역사회, 사회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에 대한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 현장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은 건강가정사의 전문적 자질 함양에 필수적인 교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자격 취득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는 이수해야 하는 관련 교과목 전체의 학점 시수를 2학점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사의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해서 건강가정협회를 구성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강가정협회는 자격증 관리, 자격 검증 및 연수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단순히 자격증을 교부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건강가정사의 자질과 자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특히 건강가정사 1급의 경우 가정생활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센터 운영의 관리자의 성격을 갖는 만큼, 교과과정이수자를 통한 자격검증과 함께 연수교육의 이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3년에 한번씩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가정사의 자격규정의 원칙은 건강가정사의 역할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의 역할은 건강가정이념의 실천가로, 또 건강가정사업의 전달자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의 운영자로 규정지를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격기준을 마련한다는데 모든 학계가 동의하고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가정사의 자격인증을 위한 교과목 개발이 시급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건강가정사의 전문가적 역할에 부합하는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욱 시급한 일은 자격인증에 포함되는 교과목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다. 건강가정관련 교과목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 뿐 아니라 기존의 교과목을 건강가정사의 자격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서 학계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셋째,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실천과 경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 실천과 경험을 위해서는 건강가정사업의 새로운 현장 개발이 함께 요구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외에도 건강가정사업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건강가정사의 실천 경험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즉, 여성발전센터, 주민자치센터, 가정상담 및 교육기관, 가정관련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건강가정사의 실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질관리가 요구되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자격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건강가정사가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엄격한 자질관리가 요구된다. 앞서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자격기준과 인증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안에 불과할 뿐이며, 보다 엄격한 자질관리를 위해서는 각 등급별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의 다른 자격증을 참고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 최근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자질관리를 보다 강화하였다. 기존에 1급, 2급, 3급 모두 시험을 보지 않고 교과목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부여한 결과 너무 쉽게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양적 비대와 질적 수준 저하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자격증이 지나치게 쉽게 발급되는 것은 결국 자격증 소지자들의 취업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한편 2003년 처음 시행된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1급부터 3급까지 모두 시험제도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한다. 1급부터 3급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고, 각 등급별로 시험과목을 달리하여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다.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보다 양질의 전문가를 양성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보다 적합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다른 자격증의 선례를 참고로 하여 보다 엄격한 자질관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건강가정사의 자격관리의 주체가 건강가정협회가 될

것이므로, 우리 가정학계가 건강가정협회 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실 작년 7월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을 당시, 초기 법안에는 '건강가정협회'를 명시한 조항이 있었으나,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협회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나, 건강가정사의 자격관리를 위해 건강가정협회는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건강가정사가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이념과 철학, 그리고 진정 가정의 건강성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되고 배출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협회에서 제대로 된 자격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가정협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자격, 자질 등에 정통한 가정학 전공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마땅하다.

□ 접수 일 : 2004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04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0월 14일

#### 【참 고 문 헌】

-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추진위원회(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이해를 위한 Q&A.
- 대한가정학회,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추진위원회(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 대한가정학회, 한나라당 정책위원회(2003). **가족해체방지 및 건강가정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대한가정학회,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2003). **가정학 전공자의 자격인증과 사회적 기여 워크샵 자료집**.
- 대한가정학회,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200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향후과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200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안**.
-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200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안**.